

[변 경 대 비 표]

■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

편 드 명	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변 경 서 류	집합투자계약
변 경 사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 Class S 판매보수 인하 - 직판클래스 삭제
효 력 발 생 일	2024년 09월 26일

■ 변경대비표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금융투자회사 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 칙 개정사항 반영 및 직판 클래스 삭제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 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1. (생략) 12. Class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증 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 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 합투자증권 13.~18. (생략) 19. Class S-P 수익증권 : 집합투자 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 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 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 금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 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①~② (현행과 동일)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 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1. (현행과 동일) 12. Class S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 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 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 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 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 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 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 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 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13.~18. (현행과 동일) 19. Class S-P 수익증권 : 집합투자 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 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 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 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 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

		20. <u>Class J-e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u> 21. <u>Class J-Pe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u> 22. <u>Class J-P2e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u>	<u>입자력(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u> <u>보다 판매 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익증권</u>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직판클래스 삭제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9. (생략) 20. <u>Class J-e 수익증권</u> 21. <u>Class J-Pe 수익증권</u> 22. <u>Class J-P2e 수익증권</u> ②~⑤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9. (현행과 동일)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②~⑤ (현행과 동일)
제39조(보수)	직판클래스 삭제 및 Class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S 판매보수 인하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1. (생략) 12. Class S 수익증권 가. (생략)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다.~라. (생략) 13.~19. (생략) 20. <u>Class J-e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21. <u>Class J-Pe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2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22. <u>Class J-P2e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1. (현행과 동일) 12. Class S 수익증권 가. (현행과 동일)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4 다.~라. (현행과 동일) 13.~19. (현행과 동일)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	--------------	--	---

<부칙>		<신설>	< 부 칙 25 > 제1조(시행일) 이 투자신탁은 2024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	---

<끝>